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조양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니 2018년01월 16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성명 생년월일	최종신고 주소	신고사항
황**	황** 1957-10-12	강원도 속초시 조양로142번길	재등록
윤**	윤** 1973-11-16	강원도 속초시 온정로	재등록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담당자 : 김정미 문의전화 : 033-631-1406)

2018년 01월 09일

조양동장 인

